

# 체육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89. 03. 01
- 개정 : 1992. 09. 01
- 개정 : 1997. 03. 01
- 개정 : 1998. 03. 01
- 개정 : 2005. 11. 25
- 개정 : 2008. 09. 01
- 개정 : 2012. 04. 25
- 개정 : 2013. 09. 01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수원대학교 체육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각 운동부의 운영에 관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관리, 선수의 관리, 경기력 향상 및 국내외 경기를 통한 본교의 명예를 높이며 스포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기능과 구성

제3조(기능)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체육부의 운영계획
2. 선수의 선발 및 육성
3. 감독 및 코치의 임명
4. 체육시설 관리 및 행사
5. 선수 합숙소 운영
6. 예산과 결산
7. 선수의 포상과 징계
8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본 위원과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소집과 의결) 본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부장·감독, 코치 및 고문

제6조(부장) ① 각 운동부의 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각 소속부의 제반 사항을 총괄 한다.

② 부장(감독)은 차기학년도의 선수 선발 계획을 당해 연도 2학기 중에 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7조(감독) ① 각 운동부에는 선수의 기술지도와 훈련을 담당할 감독을 둘 수 있으며, 감독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

1. 신인 선수의 발굴
2. 선수의 기본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
3. 대전 및 경기 진행
4. 기타 중요사항

② 감독은 본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코치) ① 코치는 감독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따로 둘 수 있다.

② 코치는 본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고문) 총장은 각 운동부의 전문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 제4장 특기자 <관리 및 지도>

제10조(특기자 학점취득) ① 특기자는 원칙적으로 학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.

② 공결 확인절차를 거쳐 인정받은 선수는 C학점이상 인정한다.

③ 학점 미달자 또는 미 취득자에 대해서는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.

제11조(특기자 출결사항) ① 학칙에 의한 출결규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
1. 공식경기 출전
2. 국가대표(도 대표 포함) 및 그에 준한 선수로서 전지훈련 참여
3. 공상

② 전항의 결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(확인서 첨부 등)

제12조(특기자 및 우수선수의 장학혜택) ① 체육특기자 선발 시 다음 항목 해당자외에는 입학혜택만 부여한다.

1. 단체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우승팀(정규선수)
2. 개인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우승자
3. 각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자
4. 종목별 필요선수(체육위원회에서 결정)

② 국가대표급 선수 및 그에 준한 선수(국제대회 입상)는 학비 감면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및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는 학비 감면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- ④ 본교 체육특기자 중 축구부, 여자농구부 선수 중 일정 인원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⑤ 2항 및 3항, 4항의 장학 혜택은 본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⑥ 2항 및 3항, 4항에 해당하는 자의 장학 혜택은 한 학기 시한으로 한다.

제13조(특기자의 징계) ① 특기자로서 입학 후 운동선수 생활을 포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또는 전적 향상이 미진한 자는 특기자 혜택을 박탈한다.

- ② 특기자로서 운동을 태만히 하거나 선수 자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는 경고 및 각종 대회 출전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③ 각종 경기 대회에 출전 시 학교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경고 및 대회 출전을 중지시킬 수 있다.
- ④ 재학 중 경고 및 출전 중지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특기자 혜택을 박탈한다.

제14조(특기자 혜택부여) 일반 선수로서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15조(합숙 및 합동훈련) ① 대회를 대비한 합숙 및 합동훈련은 실시 예정 10일전에 소정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부장이 체육위원회 위원장(이하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시기와 기간은 각 부의 실정 및 대회성격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

- ② 단체종목 및 개인종목의 전국대회 우승 해당자에 대하여 1년간 합숙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.(체육위원회에서 결정)

제16조(연습시간) 각 운동부의 연습시간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연습장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운동경기 참가관계) ① 국제 운동경기 이외에는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(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)에는 대외경기에 참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시합 출전비는 운동선수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체종목 및 개인종목의 전국대회 우승 해당자에 대하여 1년간 출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.(체육위원회에서 결정)

제18조(선수진료) 선수의 진료는 공상으로 인한 부상 이외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공상은 본 위원회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부 받아 본교 지정병원에서 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9조(선수의 건강관리) 선수는 연 1회 이상 건강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신상 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선수의 취업관리) 선수의 재학 중 취업(실업 및 프로팀 계약)은 불허하며, 졸업반에 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.

제21조(선수의징계) ① 선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또는 출교의 징계처분을 한다.

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  2.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부를 이탈한 자
  3. 임의로 휴학(임대포함)자
  4. 집단적 행위로 운동을 방해하거나 운동에 지장을 초래제한 자
  5. 운영 내규 제 6조를 위반한 자
  6. 기타 선수의 본분을 위배한 자
- ② 경고는 해당 운동부의 감독, 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이 행하고 출교 처분은 학칙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.

③ 위원장은 경고 처분된 자의 합숙소 생활과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,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## 제5장 회계

제22조(회계) ① 본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학교본부 회계를 통하여 집행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,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23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